

익산시훈령 제319호

익산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8월 30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직인]

익산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 일부개정규정

별표 1 익산시 사무의 함열출장소장 내부위임사항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임사무명 제1호 단위사무명 제3호 근거법령 중 “제4조의3” 을 “제4조의2” 로 하고, 동 소관 위임사무명 제4호 단위사무명 제2호 근거법령 중 “제3조의1” 을 “제3조” 로 하며, 동 소관 위임사무명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주민생활 지 원 국	6. 지적공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적공부의 비치 및 보존관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 제67조
		2. 지적공부 복구 자료조사 및 정리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3.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7.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승인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2.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8. 토지이동신청 및 지적공부정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신청	같은 법 제77조~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제67조
		2. 축척변경, 지적불부합지 등 등록사항 정정, 토지소유자 정리, 등기촉탁, 지적공부 정리 등의 통지	같은 법 제83조~제84조, 제88조~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 ~ 제94조, 제96조~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82조, 제84조~제85조
	9. 지적측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교부	같은 법 제25조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제28조
		2.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부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제12조
		3.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 교부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10. 지적정보 전담 가구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같은 법 제70조

같은 소관 위임사무명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소관 위임사무명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주민생활 지 원 국	1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농림환경국 소관 위임사무명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농림환경국	1. 오수·정화조에 관한 권한	1. 오수 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변경신고 2. 오수 정화시설 등의 준공검사 3. 오수 정화시설 등의 운영관리	「하수도법」 제34조 ~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제40조

별표 2 제명 “익산시사무의 읍·면장내부위임사항” 을 “익산시 사무의 읍·면장 내부위임사항(제2조 관련)” 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임사무명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주민생활 지 원 국	6. 지적에 관한 권한	1.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발급 및 열람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같은 소관 위임사무명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소관 위임사무명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주민생활 지 원 국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관한 권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별표 3 제명 “익산시사무의동장내부위임사항” 을 “익산시 사무의 동장
내부위임사항(제2조 관련)” 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임사무명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주민생활 지 원 국	4. 지적에 관한 권한	1.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발급 및 열람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같은 소관 위임사무명 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소관 위임사무명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주민생활 지 원 국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관한 권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 부 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익산시 사무의 합열출장소장 내부위임사항(제2조 관련)				[별표 1] 익산시 사무의 합열출장소장 내부위임사항(제2조 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주민생활 지원국	1.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2. (생략)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처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4조의3	----	1.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2. (현행과 같음) 3. ----- ----- -----	제4조의2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토지 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생략) 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 계속 보유 신고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조	4. 「외국인토지 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현행과 같음) 2. ----- ----- -----	제3조	



현행				개정안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3. (생략)				3.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지적공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적공부의 비치 및 보존관리 2. 지적공부 복구 자료조사 및 정리 3. 도면의 제작성 승인 신청, 작성 및 검사 4.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	「지적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1. 지적공부의 비치 및 보존관리 2. 지적공부 복구 자료조사 및 정리 3.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 제67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현행				개정안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7.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 승인 2.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7.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승인 2.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 조~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8.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 공부정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신청 2. 축척변경, 지적불부합지 등 등록사항 정정, 토지 소유자정리, 등기축탁, 지적공부정리 등의 통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제25조, 제31조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1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8.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 공부정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신청 2. 축척변경, 지적불부합지 등 등록사항 정정, 토지소유자 정리, 등기축탁, 지적공부 정리 등의 통지	같은 법 제77조~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7조 같은 법 제83조~제84조, 제88조~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 ~제94조, 제96조~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현행				개정안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82조, 제84조~제85조
	9. 지적측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교부 2.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의 설치 및 관리부 3.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 교부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5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7조~제60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9. 지적측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교부 2.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부 3.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의 열람 및 등본 교부	같은 법 제25조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제28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10. 지적정보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관련 자료의 관리 및 활용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10. 지적정보 전달기구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적정보 전달 관리기구의 설치	같은 법 제70조
	11. 토지이동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이동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삭 제>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현행				개정안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농림 환경국	1. 오수정화조에 관한 권한	1. 오수 정화시설 및 단독 정화조의 설치·변경신고 2. 오수 정화시설 등의 준공 검사 3. 오수 정화시설 등의 운영 관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4조, 제14조 의2	---	1. 오수정화조에 관한 권한	1. 오수 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변경신고 2. 오수 정화시설 등의 준공검사 3. 오수 정화시설 등의 운영관리	「하수도법」 제34조~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제40조
---				---			



현 행

[별표 2]

익산시사무의 읍·면장내부위임사항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주민생활 지원국	1.~5. (생략)		
	6. 지적에 관한 권한	1. 토지(임야)대장등본의 발급 및 열람사무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시행 규칙 제4조의6
	7.~9. (생략)		
	<신 설>		

개 정 안

[별표 2]

익산시 사무의 읍·면장 내부위임사항(제2조 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	1.~5. (현행과 같음)		
	6. 지적에 관한 권한	1.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발급 및 열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8.~10. (현행 (7~9와같음)		
	7.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권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익산시사무의동장내부위임사항				[별표 3] 익산시 사무의 동장 내부위임사항(제2조 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				---			
주민생활 지원국	1.~3. (생략)			-----	1.~3. (현행과 같음)		
	4. 지적에 관한 권한	1. 토지(임야)대장등본의 발급 및 열람사무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		4. 지적에 관한 권한	1.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발급 및 열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시행 규칙 제4조의6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6. (생략)				6.~7. (현행 (5~6과같음)		
	<신 설>				5.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권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익산시훈령 제320호

익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8월 30일

익 산 시 장 [직인]

익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

제목 “익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을 “익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받아 추천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과장·읍·면·동장”을 “소속 과·소·읍·면·동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과·읍·면·동장”을 “과·소·읍·면·동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속과·읍·면·동장”을 “소속 과·소·읍·면·동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장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장에게”를 “기획예산과장에게”로 하고 “디스켓에 수록하여 디스켓과 함께 제출”을 “기획예산과장이 지정하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획예산팀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심사의결서

심사대상적요	대 상 자			
	여 행 기 간			
	여 행 국			
	여 행 목 적			
	여 행 경 비			
	주 관 부 서			
적정여부판단	여 행 자			비 고
	적 정 여 부	가	부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전략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농림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 위원회 위원은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 여행 목적지의 타당성, 여행목적의 필요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년 월 일

위 원 장	부 시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기획행정국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전략산업국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농림환경국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건설교통국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자료수집계획 협의 및 귀국보고서 등 제출 확인증

1. 여행계획

소속기관			전화번호			동행인원 (본인포함)	
여 행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	급		
여행기간							
여 행 국				방문 기관			
여행목적							

2. 자료수집계획

3. 귀국보고서 및 수집 자료제출 사실(최근 3년이내의 재여행자에 한함)

성 명	여행기간	여행목적	제 출 여 부	
			보고서	자료

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 ※ 여행자는 1~3번항목 기재
- ※ 국제교류담당자는 여행계획과 과거 여행기록을 확인
- ※ 1인 1부 작성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

[별지 제8호서식]

공무국외여행허가

관계법규

- 공무국외여행규정(제3조)
- 익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제4조)

시 장	
가	부

심사대상

대 상 자	
여 행 기 간	
여 행 국	
여 행 목 적	
여 행 경 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일	심사위원	내 용		결과
		적 정	부적정	
	6명중 ()명	()명	()명	

- 부 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국외여행심사요구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대상자 조사서</td><td>대상자</td><td></td></tr> <tr><td>여행기간</td><td></td></tr> <tr><td>여행국</td><td></td></tr> <tr><td>여행목적</td><td></td></tr> <tr><td>여행경비</td><td></td></tr> <tr><td>주관부서</td><td></td></tr> <tr><td colspan="2">참고사항</td><td></td></tr> <tr><td colspan="2">요구자의견</td><td></td></tr> </table> <p>첨부사항 : 공무국외여행신청서 각 1부 위와 같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구 합니다. 심사요구자 직 위 : 기획예산과장 성 명 : (인)</p> <p>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p>	대상자 조사서	대상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경비		주관부서		참고사항			요구자의견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국외여행심사요구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대상자 조사서</td><td>대상자</td><td></td></tr> <tr><td>여행기간</td><td></td></tr> <tr><td>여행국</td><td></td></tr> <tr><td>여행목적</td><td></td></tr> <tr><td>여행경비</td><td></td></tr> <tr><td>주관부서</td><td></td></tr> <tr><td colspan="2">참고사항</td><td></td></tr> <tr><td colspan="2">요구자의견</td><td></td></tr> </table> <p>첨부사항 : 공무국외여행신청서 각 1부 위와 같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구 합니다. 년 월 일 심사요구자 직 위 : 기획예산과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p> <p>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p>	대상자 조사서	대상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경비		주관부서		참고사항			요구자의견																																																								
대상자 조사서		대상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경비																																																																																											
	주관부서																																																																																												
참고사항																																																																																													
요구자의견																																																																																													
대상자 조사서	대상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경비																																																																																												
	주관부서																																																																																												
참고사항																																																																																													
요구자의견																																																																																													
<p>[별지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국외여행심사의결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심사 대상 적요</td><td>대상자</td><td></td></tr> <tr><td>여행기간</td><td></td></tr> <tr><td>여행국</td><td></td></tr> <tr><td>여행목적</td><td></td></tr> <tr><td>여행경비</td><td></td></tr> <tr><td>주관부서</td><td></td></tr> <tr><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적정 여부 판단</td><td>여행자</td><td></td><td></td><td></td></tr> <tr><td>적정여부</td><td>가</td><td>부</td><td>비 고</td></tr> <tr><td>위원장</td><td></td><td></td><td></td></tr> <tr><td>부위원장</td><td></td><td></td><td></td></tr> <tr><td>전략산업국장</td><td></td><td></td><td></td></tr> <tr><td>주민생활지원국장</td><td></td><td></td><td></td></tr> <tr><td>농림환경국장</td><td></td><td></td><td></td></tr> <tr><td>건설교통국장</td><td></td><td></td><td></td></tr> </table> <p>※ 위원회 위원은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 여행 목적지의 타당성, 여행목적의 필요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년 월 일</p> <p>위원장 부 시 장 인 부위원장 기획행정국장 인 위 원 전략산업국장 인 위 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인 위 원 농림환경국장 인 위 원 건설교통국장 인</p>	심사 대상 적요	대상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경비		주관부서		적정 여부 판단	여행자				적정여부	가	부	비 고	위원장				부위원장				전략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농림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p>[별지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국외여행심사의결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심사 대상 적요</td><td>대상자</td><td></td></tr> <tr><td>여행기간</td><td></td></tr> <tr><td>여행국</td><td></td></tr> <tr><td>여행목적</td><td></td></tr> <tr><td>여행경비</td><td></td></tr> <tr><td>주관부서</td><td></td></tr> <tr><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적정 여부 판단</td><td>여행자</td><td></td><td></td><td></td></tr> <tr><td>적정여부</td><td>가</td><td>부</td><td>비 고</td></tr> <tr><td>위원장</td><td></td><td></td><td></td></tr> <tr><td>부위원장</td><td></td><td></td><td></td></tr> <tr><td>전략산업국장</td><td></td><td></td><td></td></tr> <tr><td>주민생활지원국장</td><td></td><td></td><td></td></tr> <tr><td>농림환경국장</td><td></td><td></td><td></td></tr> <tr><td>건설교통국장</td><td></td><td></td><td></td></tr> </table> <p>※ 위원회 위원은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 및 시기의 타당성, 여행 목적지의 타당성, 여행목적의 필요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년 월 일</p> <p>위원장 부 시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기획행정국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전략산업국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농림환경국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건설교통국장 (서명 또는 인)</p>	심사 대상 적요	대상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경비		주관부서		적정 여부 판단	여행자				적정여부	가	부	비 고	위원장				부위원장				전략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농림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사 대상 적요		대상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경비																																																																																											
	주관부서																																																																																												
적정 여부 판단	여행자																																																																																												
	적정여부	가	부	비 고																																																																																									
	위원장																																																																																												
	부위원장																																																																																												
	전략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농림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사 대상 적요	대상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경비																																																																																												
	주관부서																																																																																												
적정 여부 판단	여행자																																																																																												
	적정여부	가	부	비 고																																																																																									
	위원장																																																																																												
	부위원장																																																																																												
	전략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농림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현	행
----------	----------

[별지 제7호서식]
자료수집계획 협의 및 귀국보고서 등 제출 확인증

1. 여행계획

소속기관	전화번호	동행인원 (본인포함)
여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	급
여행기간		
여행국	방문 기관	
여행목적		

2. 자료수집계획

3. 귀국보고서 및 수집 자료제출 사실
(최근 3년이내의 재여행자에 한함)

성명	여행기간	여행목적	제출 여부	
			보고서	자료

년 월 일
작성 자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소속기관 확인	※ 여행자는 굵은 선내만 기재 ※ 국제교류담당자는 여행계획과 과거 여행기록을 확인(단,과거 여행사실이 없을 경우 3의 굵은 선내에 “해당없음”이라 기재)후 날인 ※ 1인 1부 작성후 기획예산담당자에게 제출
------------	--

[별지 제8호서식]

공무국외여행허가

시	장
가	부

관계법규
○ 공무국외여행규정(제3조)
○ 익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제4조)

심사대상

대상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경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구분	가	부
적정여부		

[별지 제7호서식]
자료수집계획 협의 및 귀국보고서 등 제출 확인증

1. 여행계획

소속기관	전화번호	동행인원 (본인포함)
여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	급
여행기간		
여행국	방문 기관	
여행목적		

2. 자료수집계획

3. 귀국보고서 및 수집 자료제출 사실
(최근 3년이내의 재여행자에 한함)

성명	여행기간	여행목적	제출 여부	
			보고서	자료

년 월 일
작성 자 (서명 또는 인)

※ 여행자는 1~3번항목 기재
※ 국제교류담당자는 여행계획과 과거 여행기록을 확인
※ 1인 1부 작성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

[별지 제8호서식]

공무국외여행허가

시	장
가	부

관계법규
○ 공무국외여행규정(제3조)
○ 익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제4조)

심사대상

대상자
여행기간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경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일	심사위원	내용		결과
		적정	부적정	
	6명중 ()명	()명	()명	



익산시고시 제2010-77호

도로구역결정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26일

익 산 시 장

1. 도로 구역 결정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이 유	비 고
			시 점	종 점				
시도	시도 31호선	용연~ 무형	삼기면 서두리 산26-6	삼기면 오룡리 산143-7	0.465		산업단지 연결도로	
군도	군도 23호선	금마~ 함열	삼기면 연동리 600-11	낭산면 용기리 1157-31	0.899		"	

2. 사업시행기간 : 2010. 1. 1 ~ 2011. 12. 30

3.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익산시청 경영개발과(☎063-859-4523)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편입 물건조서 : 붙임내역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공사명 : 익산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시도31호선)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토지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	당초지번			지번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	삼기면 서두리	산26-1	임	369	산26-6	196	진성호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130				
2	삼기면 서두리	산26-3	도로	117	산26-3	117	익산군					
3	삼기면 서두리	산26-4	임	96	산26-4	96	전라북도					
4	삼기면 오룡리	630-14	임	823	630-65	440	신현삼	익산시 영등동 858-3				
5	삼기면 오룡리	630-14	임	383	630-66	55	신현삼	익산시 영등동 858-3				
6	삼기면 오룡리	630-20	답	482	630-58	248	최춘섭	익산시 남중동 233 거성아파트 2-102				
7	삼기면 오룡리	630-23	전	9,902	630-60	5,280	해주씨씨태주 공과문중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621				
8	삼기면 오룡리	630-23	전	4,622	630-67	528	해주씨씨태주 공과문중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621				
9	삼기면 오룡리	630-24	전	239	630-61	213	최병갑 (지분1/3) 최은락 (지분1/3) 최홍락 (지분1/3)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613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242 익산군 망성면 화산리 101				
10	삼기면 오룡리	630-28	전	312	630-62	101	이현자 (지분1/3) 이현순 (지분1/3) 이현임 (지분1/3)	익산시 창인동1가 157-8 익산시 모현동1가 335-2 6차현대아파트405-120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12-1 남성오피스텔 101	진흥설비 주식회사	전북 익산시 남중동 102-1 제일빌딩1층	가등기권	
11	삼기면 오룡리	630-47	답	1,126	630-63	158	신현삼	익산시 영등동 858-3				
12	삼기면 오룡리	630-48	답	2,825	630-64	1,736	신현삼	익산시 영등동 858-3				
13	삼기면 오룡리	630-48	답	1,089	630-68	114	신현삼	익산시 영등동 858-3				
14	삼기면 오룡리	630-57	답	3,045	630-59	991	최춘섭	익산시 남중동 233 거성아파트 2-102				
15	삼기면 오룡리	630-57	답	2,054	630-69	198	최춘섭	익산시 남중동 233 거성아파트 2-102				
16	삼기면 오룡리	809-1	임	1,646	809-1	1,646	해주씨씨태주 공과문중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621				
17	삼기면 오룡리	809-2	임	327	809-2	327	상주박씨운인 공과문중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21				
18	삼기면 오룡리	809-3	임	332	809-12	42	강진화	익산시 창인동1가 108-3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토지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	당초지번			지번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삼기면 오룡리	809-4	임	182	809-13	3	해주씨태주공파문중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621				
20	삼기면 오룡리	809-4	임	179	809-15	22	해주씨태주공파문중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621				
21	삼기면 오룡리	809-5	임	1,213	809-14	945	해주씨태주공파문중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621				
22	삼기면 오룡리	855-5	장	9,016	855-18	365	주식회사 부경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855-5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압류	
									익산시		압류	
									익산세무서		압류	
									국민연금관리공단 익산지사		압류	
									신한판매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1258 중앙유통단지 나동 1128,1129호	가압류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익산지점)	근저당권										
23	삼기면 오룡리	855-17	장	9,182	855-19	183	주식회사 제일기업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855-17	국민연금공단익산지사		압류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익산중앙지점)	임의경매 결정, 근저당권	
									익산시		압류	
									익산세무서		압류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익산지사)	압류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5(익산지점)	가압류, 근저당권	
									이창성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3동 극동아파트 1-202	가압류	
정오원	익산시 송학동 238-70	가압류										
24	삼기면 오룡리	869	답	2,767	869-4	2,499	신현삼	익산시 영등동 858-3				
25	삼기면 오룡리	869	답	268	869-5	135	신현삼	익산시 영등동 858-3				
26	삼기면 오룡리	891	답	61	891	61	국(재정경제부)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토지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	당초지번			지번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27	삼기면 오룡리	891-22	답	145	891-24	80	국(재정경제부)					
28	삼기면 오룡리	892	구거	67	892-23	5	국(농림부)					
29	삼기면 오룡리	892	구거	62	892-24	7	국(농림부)					
30	삼기면 오룡리	891	구거	62	891-24	7	국(농림부)					
31	삼기면 오룡리	산125-2	구거	1,686	산125-5	14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2	삼기면 오룡리	산125-2	구거	1,686	산125-6	16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8				
33	삼기면 오룡리	산125-4	구거	298	산125-4	29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9				
34	삼기면 오룡리	산126-1	임	2,691	산126-1	2,691	김미숙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 262-1				
35	삼기면 오룡리	산126-2	구거	1,031	산126-11	83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6	삼기면 오룡리	산126-8	임	49	산126-8	49	전라북도					
37	삼기면 오룡리	산126-10	임	136	산126-10	136	전라북도					
38	삼기면 오룡리	산127-1	임	3,273	산127-4	487	상주박씨치인공파중중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21				
39	삼기면 오룡리	산127-2	구거	1,785	산127-5	1,31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0	삼기면 오룡리	산143	임	1,786	산143-7	205	최병갑 (지분1/3) 최은락 (지분1/3) 최홍락 (지분1/3)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611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219-1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6-3 공전아파트 에이동 703호				
	총계					23,1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공사명 : 익산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군도23호선)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토지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	당초지번			지번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삼기면 연동리	596-2	전	10,690	596-18	1,447	박정란 (지분 2640/14694) 소극수 (지분 5892/14694) 남옥녀 (지분 2890/14694) 최순옥 (지분 3272/14694)	익산군 금마면 서교도리 192 익산군 왕궁면 용화리 14 이리시 인화동1가 62-3 익산시 금마면 서교도리 193-1				
2	삼기면 연동리	596-10	임	170	596-10	170	김선진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대림아파트 6동1202호				
3	삼기면 연동리	596-11	수도용지	347	596-11	347	국(건설교통부)					
4	삼기면 연동리	597-2	전	6,440	597-4	865	이기년	익산시 신동 809-4				
5	삼기면 연동리	598-1	전	8,725	598-9	2,762	이병기 (지분1/3) 이금암 (지분1/3) 이영배 (지분1/3)	익산시 남중동 23-142 익산시 신동 768-12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805	양성이씨 일시중공파 익산중중 대표자 이병용	전북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산42-1	근저당권	
6	삼기면 연동리	598-5	임	6,138	598-10	1,964	김순정 (지분2/4)	익산시 송학동 128-24 영무예다음 101동 1003호 익산시 송학동 128-24 영무예다음 101동 1003호				
7	삼기면 연동리	598-8	임	538	598-8	538	이병기 (지분2/6) 이금암 (지분2/6) 이영배 (지분2/6)	익산시 남중동 23-142 익산시 신동 768-12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805				
8	삼기면 연동리	599-11	임	558	599-15	9	이석준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602				
9	삼기면 연동리	599-13	잡	985	599-16	554	이태승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99-13	삼기농협협동조합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근저당권	
10	삼기면 연동리	599-14	임	549	599-14	549	이태승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99-13	삼기농협협동조합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83-10	근저당권	
									"	"	지상권	
11	삼기면 연동리	600-2	전	1,417	600-11	25	김병용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99-4				
12	삼기면 연동리	608-1	대	277	608-16	228	이관식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90-2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토지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	당초지번			지번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	삼기면 연동리	609-1	전	238	609-1	238	임재순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산220-2				
14	삼기면 연동리	609-3	전	298	609-7	90	최인상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606-5				
15	삼기면 연동리	648-29	전	1,208	648-51	63	신귀철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220				
16	삼기면 연동리	648-30	전	512	648-52	15	전라북도 (교육감)					
17	삼기면 연동리	650-6	전	4,563	650-73	214	김정자	익산시 남중동 25-13				
18	삼기면 연동리	648-37	도로	1	648-37	1	이시우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45				
19	삼기면 연동리	648-48	수도용지	3	648-48	3	국(건설교통부)					
20	삼기면 연동리	650-48	도로	10	650-48	10	박계락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606				
21	삼기면 연동리	650-49	도로	537	650-49	537	익산시					
22	삼기면 연동리	650-60	도로	59	650-60	59	전라북도					
23	삼기면 연동리	650-61	도로	88	650-61	88	전라북도					
24	삼기면 연동리	650-66	수도용지	176	650-66	176	국(건설교통부)					
25	삼기면 연동리	650-67	수도용지	149	650-67	149	국(건설교통부)					
26	삼기면 연동리	650-69	수도용지	82	650-69	82	국(건설교통부)					
27	삼기면 연동리	산216	임	1422	산216-29	1184	최영훈	대구시 서구 평리동 1045-6				
28	삼기면 연동리	산216-28	임	734	산216-28	734	박정란 (지분 5912/14694) 소극수 (지분 5892/14694) 남옥녀 (지분 2890/14694)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 192 익산군 왕궁면 용화리 14 이리시 인화동1가 62-3				
29	낭산면 용기리	1149-10	구거	2,277	1149-28	20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0	낭산면 용기리	1149-10	구거	2,277	1149-29	15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1	낭산면 용기리	1157-4	도	43	1157-4	43	김화성 (지분1/3) 김상진 (지분1/3) 김성진 (지분1/3)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강리 358 익산군 낭산면 용기리 1295 대전시 석교동 275				
32	낭산면 용기리	1157-5	전	1,634	1157-29	54	김진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택지개발 마곡수명산파크7단지 701-910	낭산농업협동조합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554-7	근저당권	
33	낭산면 용기리	1157-17	도	65	1157-17	65	익산군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토지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	당초지번			지번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4	낭산면 용기리	1157-20	도	14	1157-20	14	전라북도					
35	낭산면 용기리	1157-21	도	14	1157-21	14	전라북도					
36	낭산면 용기리	1157-6	대	122	1157-30	7	장갑순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157-6				
37	낭산면 용기리	1157-26	전	713	1157-31	447	김진선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90 등촌4단지주공아파트 403-14	낭산농업협동조합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554-7	근저당권	
38	낭산면 용기리	1158-1	도	509	1158-1	509	김태진 (지분1/2) 김상진 (지분1/2)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295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261				
39	낭산면 용기리	1158-2	임	6,697	1158-38	3,448	김문기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927				
40	낭산면 용기리	1158-5	임	1,763	1158-39	975	김진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택지개발 마곡수명산파크7단지 701-910	낭산농업협동조합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554-7	근저당권	
41	낭산면 용기리	1158-7	전	2,185	1158-40	271	강이영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177	낭산농업협동조합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554-7	근저당권	
42	낭산면 용기리	1158-8	구거	2,945	1158-41	6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3	낭산면 용기리	1158-10	구거	2,363	1158-42	77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4	낭산면 용기리	1158-14	구	40	1158-14	4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5	낭산면 용기리	1158-16	임	17	1158-16	1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6	낭산면 용기리	1158-17	구	301	1158-17	301	김태진 (지분1/2) 김진각 (지분1/2)	익산군 낭산면 용기리 1261 익산군 낭산면 용기리 1261				
47	낭산면 용기리	1158-24	임	1,121	1158-43	802	김문기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927				
48	낭산면 용기리	1158-26	도	144	1158-26	144	익산군					
49	낭산면 용기리	1158-31	도	93	1158-31	93	전라북도					
50	낭산면 용기리	1158-32	도	16	1158-32	1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1	낭산면 용기리	1645-3	답	2,109	1645-10	218	박재현	익산시 부송동 1035-2				
52	낭산면 용기리	1645-4	답	3,015	1645-11	666	박재현	익산시 부송동 1035-2				
53	낭산면 용기리	1645-8	답	724	1645-12	179	김진태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157-6				
54	낭산면 용기리	1655-1	답	1,546	1655-5	620	김덕경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18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임차권	
55	낭산면 용기리	1655-2	답	1,159	1655-6	120	김덕경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18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임차권	
56	낭산면 용기리	1656-1	답	2,301	1656-6	1,548	김재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 524-1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임차권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토지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	당초지번			지번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7	낭산면 용기리	1656-2	답	1631	1656-2	1631	강이영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177	낭산농업협동조합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554-7	근저당권	
58	낭산면 용기리	1656-3	답	1,613	1656-7	1,348	강이영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177	낭산농업협동조합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554-7	근저당권	
59	낭산면 용기리	1656-4	답	2,042	1656-8	861	김성식	군산시 서흥남동 842-3				
60	낭산면 용기리	1657-2	답	572	1657-12	21	김한경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1				
61	낭산면 용기리	1657-3	답	282	1657-3	282	최수진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213				
62	낭산면 용기리	1657-4	답	27	1657-4	27	박연순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181				
63	낭산면 용기리	1676	도로	2,270	1676-2	149	국(농수산부)					
64	낭산면 용기리	1676	도로	2,270	1676-3	7	국(농수산부)					
65	낭산면 용기리	1679	구거	3,193	1679-3	265	국(농수산부)					
66	낭산면 용기리	1679	구거	3,193	1679-5	57	국(농수산부)					
67	낭산면 용기리	1679	구거	3,193	1679-7	231	국(농수산부)					
68	낭산면 용기리	1686	구거	474	1686-1	292	국(농수산부)					
	총계					30,615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 공사명 : 익산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시도31호선)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단위	물건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삼기면 오룡리	산126-1	계사	강봉조,비닐	200.8	㎡	김미숙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 262-1				
			계사	강봉조,비닐	192.5	㎡						
			계사	강봉조,비닐	181.5	㎡						
			계사	강봉조,비닐	173.3	㎡						
			계사	강봉조,비닐	162.3	㎡						
			계사	강봉조,비닐	156.8	㎡						
			계사	강봉조,비닐	107.3	㎡						
			계사	강봉조,비닐	107.3	㎡						
			계사	강봉조,비닐	101.8	㎡						
			계사	강봉조,비닐	63.3	㎡						
			창고	콘테이너	18.0	㎡						
			창고	콘테이너	24.0	㎡						
			관정		1.0	식						
측산보상	측산보상	1.0	식									
2	삼기면 오룡리	809-5	분묘		23	기	해주최씨태주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621				
			망부석		2	개						
			상석		1	식						
			옥향		2	주						
			옥향		2	주						
			수국		1	주						
			옥향		5	주						
			철쭉		11	주						
3	삼기면 오룡리	630-48	이팝나무		380	주	신현삼	서울시용산구산천동 193삼성아파트101동 703				
4	삼기면 오룡리	609-14	단풍나무 메타세콰이아		710 45	주 주	신현삼	서울시용산구산천동 193삼성아파트101동 703				
5	삼기면 오룡리	809-2	감나무		1730	주	상주박씨운인공파문중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21				
			소나무		504	주						
			회양목		966	주						
			조경수		50	주						
6	삼기면 오룡리	809-3	감나무		2	주	강진화	익산시 창인동1가 108-3				
			매실나무		3	주						
			복숭아		1	주						
			살구나무		2	주						
			오가피		2	주						
7	삼기면 오룡리	855-5	감나무		3	주	주식회사 부경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855-5				
			감나무		1	주						
8	삼기면 오룡리	855-17	바닥포장		183	㎡	주식회사 제일기업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855-17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단위	물건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및내용	
9	삼기면 오룡리	산126-10	간판	(주)탑엘이디	1	식	(주) 탑엘이디					
10	삼기면 오룡리	산126-10	간판	(주)야정	1	식	(주)야정					
11	삼기면 오룡리	산126-10	간판	자목나라	1	식	자목나라					
12	삼기면 오룡리	산127-1	회양목		13,770	주	상주박씨 처인공파 문중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21				
			감나무		110	주						
			소나무		55	주						
			주목		300	주						
			장미		300	주						
13	삼기면 서두리	산26-1	인삼밭 13동	목조,차양막	300	㎡	진성호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130				
14	삼기면 오룡리	산143-5	분묘		8.0	기	전라북도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사서

◆ 공사명 : 익산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군도23호선)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단위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삼기면 연동리	산216	분묘		5	기	최영훈	대구시 서구 평리동 1045-6				
			비석		2	개						
			갓비석		2	개						
			망부석		2	개						
			돌레석		2	개						
			향나무		6	주						
			노간주		1	주						
			옥향		1	주						
2	삼기면 연동리	597-2	인삼밭	목조,차양막	998	㎡	최문부					
3	삼기면 연동리	599-13	상가	슬라브콘크리트 적벽돌	160.9	㎡	이태승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599-13				
			주택	시멘트벽돌싱글	98.6	㎡						
			창고	판넬철재조	14.4	㎡						
			바닥	콘크리트포장	522.5	㎡						
			관정		1	식						
			소나무		56	주						
			은행나무		6	주						
			매실나무		3	주						
			감나무		3	주						
			밤나무		2	주						
			모과나무		1	주						
			철죽		8	주						
			사철나무		1	주						
			복숭아		1	주						
			천리향		1	주						
			감나무		1	주						
			은행나무		1	주						
			머루나무		2	주						
			두릅		6	주						
			보리수		1	주						
동백		1	주									
감나무		1	주									
수도시설		1	식									
영업보상 (석불가센터)		1	식									
리프트 등		1	식									
전기시설		1	식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단위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가로간판		1	식						
			간판	식불카센타	1	식						
4	삼기면 연동리	609-1	주택	슬레이트 블럭몰탈조	54.6	㎡	임재순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산220-2				
			창고	슬레이트 블럭몰탈조	35.6	㎡						
			바닥	콘크리트포장	25.4	㎡						
			담장	블럭몰탈조	75.0	㎡						
			대문	철문도색	4.0	㎡						
			가추		25.4	㎡						
			감나무		2.0	주						
			매실나무		1.0	주						
			건사		1.0	식						
5	삼기면 연동리	609-3	주택	스레트위강판 블럭몰탈	65	㎡	최인상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606-5				
			가추		20.1	㎡						
			창고	목조	7	㎡						
			보일러실	블럭몰탈조	4	㎡						
			건사	철제	3.25	㎡						
			관정		1	식						
			장독대		1	식						
			화장실	블럭스레트	1	식						
			계사	블럭스레트	12	㎡						
			감나무		7	주						
			배나무		4	주						
			단풍나무		1	주						
			뽕나무		1	주						
			사철나무		1	주						
			호두나무		1	주						
			개나리		1	주						
			장미		2	주						
			철쭉		1	주						
			탱자울		3	m						
관상수		1	주									
화단,작약, 목단 등		1	식									
6	삼기면 연동리	608-1	상가1층	슬라브콘크리트 적벽돌	115	㎡	이관식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90-2				
			주택2층	슬라브콘크리트 적벽돌	114	㎡						
			지붕시설 3층	옥탑시설 심야전기	1	식						
			창고	관벨철제조	8.0	㎡						
			창고	콘테이너	12.0	㎡						
			비닐 하우스	강봉조,비닐	48.0	㎡						
			바닥	콘크리트포장	72.0	㎡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단위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관정		1.0	식						
			가추1	스텐레스	1.0	식						
			가추2	판넬	8.0	㎡						
			담장	브릭	16.0	m						
			가추3	목조	1.0	식						
			건사		1.0	식						
			영업보상	중화요리	1.0	식						
			영업보상	정육점	1.0	식						
			간판		4	식						
			살구나무		1.0	주						
7	삼기면 연동리	648-51	잔디		63	㎡	신귀철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220				
8	삼기면 연동리	산216-12	인삼밭	목조,차양막	1142	㎡	최문부					
9	낭산면 용기리	1157-6	주택	슬레이트 블럭몰조	53.9	㎡	장갑순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157-6				
			가추1	슬레이트 블럭몰조	18.0	㎡						
			창고	슬레이트 블럭몰탈조	29.7	㎡						
			담장	블록	8.0	㎡						
			대문	철문도색	4.0	㎡						
			가추2	스레이트	5.4	㎡						
			세면장	블럭슬레이트	10.5	㎡						
			가추3	블록선라이트	14.0	㎡						
			가추4	철파이프스레이트	4.0	㎡						
			관정		1.0	식						
			장미		1.0	주						
			영업보상		1	식						
10	낭산면 용기리	1645-4	감나무		68.0	주	박재현	익산시 부송동 1035-2				
			고사리		884	㎡						
11	낭산면 용기리	1645-3	감나무		15.0	주	박재현	익산시 부송동 1035-2				
12	낭산면 용기리	1158-5	매실나무		60.0	주	김진선	강서구 등촌동690 등촌4단지주공403-1406				
			감나무		5.0	주						
			철쭉		10	주						
13	낭산면 용기리	1157-11	비석	표지석	1.0	기	소도마을					
14	낭산면 용기리	1158-10	두층나무		37	주	김덕경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181				
			두층나무		4	주						
			밤나무		2	주						
15	낭산면 용기리	1185-8	두릅		25.0	주	금강농지 개량					

익산시공고 제2010-1143호

공 고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혜택의 제공으로 감동받는 세정을 구현함으로써 주는 것 없이 가져만 간다는 지방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자진납세의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실납세자의 기준을 정하여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일 : 매년 1월 말일, 7월 말일(연 2회 시행)

나. 성실납세자 기준

- 1) 체납지방세(병기하여 부과하는 국세 포함)가 없는 자로서,
- 2)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부과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
- 3)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다. 감면기간 : 기준일로부터 6개월

라. 시행일자 : 2010. 12. 1

마. 면제되는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3. 참고사항

- 가. 개정조례안
- 나.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의견 제출할 곳 : (우)576-110 /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징수과(전화 063-859-5136, 팩스 063-859-5055)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 시장은 매년 1월 말일과 7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준일로부터 6개월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별표 1 (증명)란 제6호 가목) 발급 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를 처음 시행하는 경우에는 2010년 11월 30일을 기준일로 하며, 수수료 감면기간은 다음 도래하는 기준일까지로 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안)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7조의2(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u> <u>시장은 매년 1월 말일과 7월 말일을</u> <u>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u> <u>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u> <u>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에</u> <u>대하여는 기준일로부터 6개월간</u> <u>지방세에 관한 증명(별표 1 (증명)란</u> <u>제6호 가목) 발급 수수료를 감면한다.</u> <u>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u> <u>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u></p>

익산시공고 제2010-1193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에 따라 「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 마련

- 1)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안 제2조제1항)
- 2)임용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부가금 기재(안 제7조제1항)
- 3)징계부가금 부가기준 신설(안 별표 1의2)

나. 기타 징계부가금 관련 용어정리 및 미비사항 정비

- 1)용어정리(안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6조, 제7조)

가)“징계 및 징계부가금”을 “징계등”으로 정의

나)“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정의

다)“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정의 등

- 2)임용권자의 징계의결요구기준 조문정비(안 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570-753,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전화 063-859-5718, FAX 063-859-50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063-859-57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징계양정”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혐의자의”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으로 하며,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징계를 의결하여야”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계사건”을 각각 “징계등 사건”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징계의결서”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를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로 하고, “기재하여야 하며”를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 음주운전 관련 사건, 무면허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징계”를 각각 “징계등”으로 하며,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별표 1 제목 “징계양정기준 (제2조 관련)”을 “징계기준 (제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4로 하고, 종전의 별표 1의2 제목 중 “(제2조 관련)”을 “(제7조 관련)”으로 하며,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을 별표 5로 하고, 종전의 별표 1의3 제목 중 “(제2조 관련)”을 “(제7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4를 별표 6으로 하고, 종전의 별표 1의4 제목 중 “(제2조 관련)”을 “(제7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3조 관계)”를 “(제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목 “징계양정감정기준(제4조 관계)”를 “징계의 감정기준 (제4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 한다.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사유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누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1의2와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p> <p style="margin-left: 2em;">②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p>	<p>제1조 (목적)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p> <p>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p> <p style="margin-left: 2em;">-----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 ----- <단서 삭제></p> <p>② -----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p>



현행	개정안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징계의결</u>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생략) 2. (생략)</p> <p>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u>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1. (생략) 2. (생략) 3. (생략)</p> <p>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u>징계를 의결하여야</u> 한다.</p>	<p>③----- ----- ----- -----<u>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u>-----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u>징계의결등 요구권</u>-----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p> <p>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 ----- ----- ----- ----- -----<u>징계의결등을 하여야</u>-----.</p>



현행	개정안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징계의결</u>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 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u>징계사건</u></p> <p>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 실인 <u>징계사건</u></p> <p>3. (현행과 같음)</p> <p>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 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u>징계의결서</u>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 ----- -----<u>징계의결등</u> -----.</p> <p>1. ----- ----- -----<u>징계등 사건</u></p> <p>2. ----- -----<u>징계등 사건</u></p> <p>3. (생략)</p> <p>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u>징계등 의결서</u>(이하 “<u>징계등 의결서</u>”라 한다)-----.</p>
<p>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u>징계의결서</u>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p>	<p>②----- ----- <u>징계등 의결서</u>----- ----- -----.</p>



현행	개정안
<p>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p> <p><단서 신설></p>	<p>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 ----- -----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 -----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 .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 음주운전 관련 사건, 무면허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4, 별표 5를 별표 6을 각각 적용한다.</p>
<p>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 징계의결등 ----- ----- 징계등 ----- -----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 ----- 징계등 ----- ----- .</p>

현행	개정안
<p>③ <u>징계의결</u> 요구권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u>징계의결등</u> ----- ----- ----- ----- ----- -----.</p>

현행	개정안
----	-----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2조 관련)

비위도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화제질서 문란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성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당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
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

징계기준 (제2조 관련)

비위도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화제질서 문란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성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당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
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	---	---	---	---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제2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 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제7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 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		--	--	--	--	--	--
----		--	--	--	--	--	--
---		---	---	중징계		---	----
---		---					

현행	개정안																			
<p><신 설></p>	<p>[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th> <th style="width: 15%;">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th> <th style="width: 15%;">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th> <th style="width: 15%;">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th> <th style="width: 15%;">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1. 금품·향응 수수</td> <td>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td> <td>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td> <td>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td> <td>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td> </tr> <tr> <td>2. 공금 횡령·유용</td> <td>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td> <td>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td> <td>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td> <td>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td> </tr> </tbody> </table> <p>※ 비교</p> <p>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p> <p>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p>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현 행			개 정 안		
<p><u>[별표 1의3]</u></p> <p>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제2조 관련)</p>			<p><u>[별표 5]</u></p> <p>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제7조 관련)</p>		
유 형 별	처리기 준	비 고	-----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징계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중징계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징계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중징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중징계		---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중징계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징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	-----

현행				개정안																																																									
<p><u>[별표 1의4]</u> 무면허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 (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혈중알콜농도</th> <th>사고여부</th> <th>징계처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음주측정거부</td> <td></td> <td></td> <td>중징계(정직3월)</td> </tr> <tr> <td rowspan="4">음주</td> <td rowspan="2">0.1% 이상</td> <td>사고발생</td> <td>중징계(정직3월)</td> </tr> <tr> <td>사고없음</td> <td>중징계(정직2월)</td> </tr> <tr> <td rowspan="2">0.05~0.1% 미만</td> <td>사고발생</td> <td>중징계(정직1월)</td> </tr> <tr> <td>사고없음</td> <td>경징계(감봉2월)</td> </tr> <tr> <td rowspan="2">미음주</td> <td></td> <td>사고발생</td> <td>사고 경중에 따라 (감봉1월~정직3월)</td> </tr> <tr> <td></td> <td>사고없음</td> <td>경징계(견책)</td> </tr> </tbody> </table>				구분	혈중알콜농도	사고여부	징계처분기준	음주측정거부			중징계(정직3월)	음주	0.1% 이상	사고발생	중징계(정직3월)	사고없음	중징계(정직2월)	0.05~0.1% 미만	사고발생	중징계(정직1월)	사고없음	경징계(감봉2월)	미음주		사고발생	사고 경중에 따라 (감봉1월~정직3월)		사고없음	경징계(견책)	<p><u>[별표 6]</u> 무면허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 (제7조 관련)</p> <table border="1">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td> <td rowspan="2">----</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 rowspan="2">---</td> <td rowspan="2">----</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혈중알콜농도	사고여부	징계처분기준																																																										
음주측정거부			중징계(정직3월)																																																										
음주	0.1% 이상	사고발생	중징계(정직3월)																																																										
		사고없음	중징계(정직2월)																																																										
	0.05~0.1% 미만	사고발생	중징계(정직1월)																																																										
		사고없음	경징계(감봉2월)																																																										
미음주		사고발생	사고 경중에 따라 (감봉1월~정직3월)																																																										
		사고없음	경징계(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감경과 가중 -사건의 정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p>				<p>※감경과 가중 -사건의 정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p>																																																									

현	개 정 안
----------	--------------

<p>[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문책기준 (제3조 관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text-align: left;">업무의 성질 \ 업무와의 관련도</th> <th>비 위 행위자 (담당자)</th> <th>직 상 감독자</th> <th>차 상 감독자</th> <th>최 고 감독자 (결재권자)</th> </tr> <tr> <td>○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r> <td>· 일반적 사항</td> <td>3</td> <td>1</td> <td>2</td> <td>4</td> </tr> <tr> <td>○ 단순반복 업무 · 중요사항</td> <td>1</td> <td>2</td> <td>3</td> <td>4</td> </tr> <tr> <td>· 경미사항</td> <td>1</td> <td>2</td> <td>3</td> <td></td> </tr> <tr> <td>○ 단독행위</td> <td>1</td> <td>2</td> <td></td> <td></td> </tr> </table>	업무의 성질 \ 업무와의 관련도	비 위 행위자 (담당자)	직 상 감독자	차 상 감독자	최 고 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 사항	3	1	2	4	○ 단순반복 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p>[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문책기준 (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text-align: left;">----- -----</th> <th>---</th> <th>---</th> <th>---</th> <th>---</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의 성질 \ 업무와의 관련도	비 위 행위자 (담당자)	직 상 감독자	차 상 감독자	최 고 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 사항	3	1	2	4																																																																			
○ 단순반복 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별표 3] 징계양정감정기준(제4조 관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td> <td style="width: 50%;">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과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td> </tr> </table>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과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p>[별표 3] 징계의 감정기준(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	-----	-----	-----	-----	-----	-----	-----	-----	-----	-----	-----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과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p><u>[별지 서식]</u></p> <p style="text-align: center;"><u>확 인 서</u></p> <p>1. 징계협약자의 인적사항</p> <p>가. 소속 및 직위</p> <p style="padding-left: 20px;">(1) 현 재</p> <p style="padding-left: 20px;">(2) 협의당시</p> <p>나. 직 급</p> <p>다. 성 명(한글) (한자)</p> <p>2. 제2조 제2항 해당비위 여부</p> <p>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p> <p>나. 공금의 횡령·유용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p> <p>다. 성폭력 범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p> <p>3. 제4조 해당 공적과 징계유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공 적 사 항)</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징계사항(경고조치 포함)</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포상 일자</th> <th style="text-align: center;">포상의 종 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행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일 자</th> <th style="text-align: center;">종 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발령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30px;"></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p> <p>작성 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p> <p>징계의결 요구권자(직위) (관인)</p>	(공 적 사 항)			징계사항(경고조치 포함)			포상 일자	포상의 종 류	시행청	일 자	종 류	발령청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공 적 사 항)			징계사항(경고조치 포함)																
포상 일자	포상의 종 류	시행청	일 자	종 류	발령청														

익산시공고 제2010-1199호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대변화에 상응하는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함
- 정보화의 발달로 행정의 하부조직 중 반장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으로 반장제도를 폐지하여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반장의 위촉, 임무, 편의제공, 회의, 상여금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안 제3조제2항, 안 제13조부터 제19조)
- 나. 통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통리장의 해임 사유와 재임명의 제한을 5년으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번호 570-753 익산시 인북로 32길 1
(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전화
063-859-5177, FAX 063-859-50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859-51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분리와 통에는 각각 이장과 통장을 두되, 통리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통·리는 3내지 9개반으로, 반은 15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통·리장의 임명) 통·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통·리장의 해임 및 재임명의 제한) ① 통·리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통·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외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해당 통·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
3. 임기 중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해당 통·리를 진출하였을 경우
4. 주민 불친절,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 통·리 세대 1/2 이상의 불신임을 얻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년2회 이상 불참하거나, 읍·면·동 행정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7.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등으로 행정수행의 차질을 초래하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기타 읍·면·동장이 판단하기에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5년간 통·리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명 “익산시 읍면동의 통리·반장 정수”를 “익산시 읍면동의 통·리장 정수”로 하고, 동 별표 중 “반장수”란을 삭제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제5항·제6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분리와 통·반에는 각각 리장과 통장·반장을 두되, 통·리·반장의 정수는 “별표2”와 같다. ③반의 확정기준은 15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10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통·리는 3내지 9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p> <p>제4조(이장의 임명 및 통장의 위촉) 이장의 임명과 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통·리장의 교체) 통·리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통·리에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통리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통·리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① (현행과 같음) ②분리와 통에는 각각 리장과 통장을 두되, 통·리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③통·리는 3내지 9개반으로, 반은 15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4조(통·리장의 임명) 통·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통·리장의 해임 및 재임명의 제한) ① 통·리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통·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 외유 등으로 3개월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해당 통·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 3. 임기 중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해당 통·리를 진출하였을 경우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반 장</p> <p>제13조(반장의 위촉) 반장의 위촉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임무)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통·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 지원 4.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5. 전투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통·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p>제15조(회의) ①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②반장은 통·리장이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주민 불친절,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 통리 세대 1/2 이상의 불신임을 얻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월례 정기 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년2회 이상 불참하거나, 읍·면·동 행정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7.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등으로 행정 수행의 차질을 초래하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기타 읍·면·동장이 판단하기에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p>②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해임일로부터 5년간 통·리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	-----

제16조(비밀유지) ①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②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삭 제)

제18조(실비보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 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삭 제)

[별표 2]

익산시 읍면동의 통리반장 정수[제3조 관련]

[별표 2]

익산시 읍면동의 통리장 정수[제3조 관련]

읍면동	법정동·리수	통분리수	통리장수	반 수	반장수	비고
29	145	1,086	1,086	3,157	3,157	
함열읍	6	49	49	78	78	
오산면	7	48	48	63	63	
황등면	8	58	58	123	123	
함라면	6	29	29	41	41	
용포면	7	25	25	35	35	
성당면	7	24	24	43	43	
용안면	11	32	32	64	64	
낭산면	7	42	42	45	45	
망성면	6	44	44	60	60	
여산면	6	38	38	67	67	
금마면	7	37	37	62	62	
왕궁면	13	57	57	86	86	
춘포면	11	40	40	84	84	
삼기면	6	27	27	42	42	
용동면	6	23	23	30	30	
중앙동	3	20	20	83	83	
평화동	2	19	19	78	78	
인화동	2	27	27	120	120	
동산동	3	55	55	281	281	
마 동	1	29	29	138	138	
남중동	1	43	43	165	165	
모현동	1	47	47	235	235	
송학동	1	19	19	80	80	
신 동	4	47	47	172	172	
영동1동	1	42	42	185	185	
영동2동	0	23	23	107	107	
어양동	1	42	42	233	233	
팔봉동	7	32	32	66	66	
삼성동	4	68	68	291	291	

읍면동	법정동·리수	통분리수	통리장수	반 수	(삭제)	비고
29	145	1,086	1,086	3,157		
함열읍	6	49	49	78		
오산면	7	48	48	63		
황등면	8	58	58	123		
함라면	6	29	29	41		
용포면	7	25	25	35		
성당면	7	24	24	43		
용안면	11	32	32	64		
낭산면	7	42	42	45		
망성면	6	44	44	60		
여산면	6	38	38	67		
금마면	7	37	37	62		
왕궁면	13	57	57	86		
춘포면	11	40	40	84		
삼기면	6	27	27	42		
용동면	6	23	23	30		
중앙동	3	20	20	83		
평화동	2	19	19	78		
인화동	2	27	27	120		
동산동	3	55	55	281		
마 동	1	29	29	138		
남중동	1	43	43	165		
모현동	1	47	47	235		
송학동	1	19	19	80		
신 동	4	47	47	172		
영동1동	1	42	42	185		
영동2동	0	23	23	107		
어양동	1	42	42	233		
팔봉동	7	32	32	66		
삼성동	4	68	68	291		



익산시공고 제2010-1200호

익산시 통·리 및 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통·리 및 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통·리장의 임명 등 절차와 관련된 민원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통·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나열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본 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리장의 임용 자격(안 제2조)

- ▶ 해당 통·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
- ▶ 통·리장은 만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하고, 자연마을은 지원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65세 이상인 자를 임명할 수 있다.

나. 통·리장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 ▶ 통리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민 1/5이상의 추천 받아야 함.
- ▶ 자연마을의 경우 주민 총회에서 직접 선출토록 함.

다. 복수후보의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 및 면접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

라. 통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 사직으로 인해 새로 임명하는 경우에도 임기 2년으로 함.(안 제 5조)

마. 통리장에게 임명장을 교부하고 임면사항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통·리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함(부칙)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 (참조 : 행정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70-753 익산시 시청로1(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전화 859-5177, FAX 859-505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859-51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익산시 통리 및 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리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리장의 자격) ① 통·리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설 통·리 지역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책임자가 없는 지역

② 통·리장은 만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한다. 다만, 주민총회를 하여 직접 통·리장을 선출하는 자연마을은 지원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신체여건을 감안하여 65세 이상인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3조(통·리장의 임명) ① 통·리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장은 1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통·리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추천서는 해당 통리의 1/5세대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주민은 만19세 이상의 자로서 세대별 1인 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마을의 경우 관습에 따라 주민 총회 등의 추천을 통해 읍·면·동장이 통·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리장 후보자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직권으로 통·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복수후보의 결정) ① 읍·면·동장은 통·리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통·리장으로 임명하고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
 ② 면접위원은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해당 읍·면·동의 지역 단체장이나 1년 이상 해당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자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5인 이상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면접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면접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 한다.
 ④ 심사 및 면접에서 논의된 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임기) ① 통·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리장의 임기는 연임가능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 전 제3조에 의하여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임기는 임명되는 날부터 시작한다.

제6조(임명장 교부 등) ①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리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통·리장 임명 후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임명대상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읍·면·동장은 통·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7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통·리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통·리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심사대상자(읍면동 통·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
주소						휴대폰)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 (비율)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	8년 이상	25		·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6년 이상 ~ 8년 미만	22			
	4년 이상 ~ 6년 미만	19			
	2년 이상 ~ 4년 미만	16			
	1년 이상 ~ 2년 미만	13			
2. 최근 5년간 사회봉사 활동 경력 (25%) (통·리장 경력 제외)	75시간 이상	25		·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50시간 이상 ~ 75시간 미만	22			
	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19			
	30시간 미만	16			
3. 통·리장활동 집중도 (15%)	겸직 없음	15			
	자유·자영업	12			
	기타	9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	장관 이상	10		·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도 단위	8			
	시 단위 이하	6			
	포상경력 무	4			
5. 면접 (25%)		25			
총계		100			
확인자(읍·면·동장)		직급		성명	(인)

※ 상기 심사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표 2]

통·리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 면접대상자 (읍면동 통리)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폰)

□ 면접기준

심 사 항 목 (비 율)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 고 (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 (5%)	우수	4~5		·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보통	3		
	다소 미흡	0~2		
2. 지역관심도 (5%)	우수	4~5		· 시,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보통	3		
	다소 미흡	0~2		
3. 지역발전 기여도 (5%)	우수	4~5		·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 및 봉사
	보통	3		
	다소 미흡	0~2		
4. 통·리장의 역할 및 책임감 (5%)	우수	4~5		· 통·리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보통	3		
	다소 미흡	0~2		
5. 인품, 태도 등 (5%)	우수	4~5		· 대주민 봉사정신 ·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보통	3		
	다소 미흡	0~2		
총 계		25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읍면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익산시 ()읍·면·동 제()통·리장							
사 진 (3×4cm)	성 명	(한자)			생년 월일	(연령 만 세)	성별	남여
	주 소				거주 기간 ~ 현재(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고
봉사활동실적 (국민운동지원단체 경력 및 비영리 민간단체복지시설 봉사 등)	단체명(직책)		활동기간			활동내용		비고
		 ~ . . . (년 월)					
		 ~ . . . (년 월)					
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비고
채납·형벌 내 용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익산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익산시

읍·면·동장 귀하

- ※ 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본인작성)
2. 봉사활동 실적증명서(시설 및 단체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지 제3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지원대상	익산시 ()읍·면·동 ()통·리장
------	--

성 명		주 소	
-----	--	-----	--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임 명 장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임 기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귀하를 『익산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
00읍·면·동 00통·리장으로 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 00읍·면·동장 (직인)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익산시공고 제2010-1201호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장학생을 매 학년별로 선발하였으나 읍·면·동별 통·리장의 임명, 위촉 시기가 달라 장학금 지급신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매 학기별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추천토록 함(안 제3조)
- 나. 장학생 선발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선발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장학금 지급을 매학기 2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행정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70-753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행정지원과(전화 859-5177, FAX 859-5059)
-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859-51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년도 학년말”을 “직전학기“로 한다.

제3조중 “지급함을”를 “지급함이”로 “매학년 마다”를 “매 학기마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선발) ① 장학생의 선발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②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제2조의 자격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 기준일로부터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중 “년간”을 “연간”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중 “1년분”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학기 2회 나누어 지급하며, 1회는 선발 후 15일 이내에 1회는 분기별 공납금 납기 개시 월중에 지급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장학생의 자격) (생략)</p> <p>1. (생략)</p> <p>2.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전년도 학년말 성적이 「5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과반수이상인 자</p> <p>3. (생략)</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직전학기</u> ----- ----- -----</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다만, 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p>	<p>제3조(-----) ----- ----- <u>지급함이</u> ----- <u>매 학기마다</u>----- ----- ----- -----.</p>
<p>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제2조의 자격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p>	<p>제4조(선발) ① 장학생의 선발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선발한다.</p> <p>②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제2조의 자격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p>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u>년간</u> 익산시 통·리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p>	<p>제5조(-----) ----- <u>연간</u>----- ----- <u>범위에서</u> -----.</p>
<p>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년분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매 학년별로 4회에 나누어 지급하며, 1회는 선발후 1월이내에 나머지 3회는 분기별 공납금 납기 개시 월중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도 있다.</p> <p>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p>	<p>제7조(-----) 장학금은 매 학기 2회 나누어 지급하며, 1회는 선발 후 15일 이내에 1회는 분기별 공납금 납기 개시 월중에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익산시공고 제2010-120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익 산 시 장

1. 개정 이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서간 사무조정과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업기술센터 내 부서간 업무조정(안 제40조)

- 1)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연구개발과” 로 조정함
- 2) 연구개발과 소관 사무 중 일부를 “기술보급과” 로 조정함

나. 여산면장 직렬조정(안 별표 3)

- 1) 직렬 조정 : 행정·환경5급 → 행정·시설·환경5급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0 - 751 익산시 시청로 32길 1 익산시 행정지원과(전화 : 859-5731, FAX : 859-505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업무 담당자(전화 : 859-57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부서간 사무조정과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업기술센터 내 부서간 업무조정(안 제40조)

- 1)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연구개발과” 로 조정함
- 2) 연구개발과 소관 사무 중 일부를 “기술보급과” 로 조정함

나. 여산면장 직렬조정(안 별표 3)

- 1) 직렬 조정 : 행정·환경5급 → 행정·시설·환경5급

3. 참고 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 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제19호, 제32호부터 제43호까지 및 제4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9호를 제62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9호부터 제6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소비자 농업 및 가정원에 관련 사업
50. 종합검정실 운영
51. 토양검정 및 걱정시비 처방
52. 농산물 안전성 분석
53.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지도
54. 농업기상조사 분석활용
55. 천적증식 및 보급사업
56. 기상 관측장비 운영관리
57. 화훼 시범사업 및 농가 기술지도
58. 국화 우량품종 보급 및 재배기술 보급
59. 국화 축제 및 행사지원
60. 화훼류 식물병원 운영
61. 꽃 온실 및 꽃 하우스 운영

같은 조 제3항 중 제9호, 제12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2호를 제56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2호부터 제5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쌀 품질관리실 운영
43. 축산일반 및 시범사업 기술지도
44.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45. 디지털 정보화센터 구축운영
46. 농가 표준소득조사 및 지도자료 활용
47. 농가경영 컨설팅 경영지도
48. 경영개선을 위한 시범농가 육성
49.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용 시범
50. 농산물 쇼핑몰 운영 및 농가교육
51.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상담
52. 농가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3.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정보제공
54.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관리
55. 브랜드 쌀 생산단지 사업

별표 3 읍·면·동장의 직급 중 여산면사무소란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으로 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 제39조 (생략)	제1조 ~ 제39조 (현행과 같음)
제40조(과의 분장사무) ① (생략)	제40조(과의 분장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u>쌀 유통개선 시범사업</u>	<삭 제>
20. ~ 31. (생략)	20. ~ 31. (현행과 같음)
32. <u>축산일반 및 시범사업 기술지도</u>	<삭 제>
33. <u>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u>	<삭 제>
34. <u>디지털 정보화센터 구축운영</u>	<삭 제>
35. <u>농가 표준소득조사 및 지도자료 활용</u>	<삭 제>
36. <u>농가경영 컨설팅 경영지도</u>	<삭 제>
37. <u>경영개선을 위한 시범농가 육성</u>	<삭 제>
38. <u>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용 시범</u>	<삭 제>
39. <u>농산물 쇼핑몰운영 및 농가교육</u>	<삭 제>
40. <u>농업 경영체 육성 및 상담</u>	<삭 제>
41. <u>농가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u>	<삭 제>
42. <u>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정보제공</u>	<삭 제>
43. <u>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관리</u>	<삭 제>
44. ~ 47. (생략)	44. ~ 47. (현행과 같음)
48. <u>고품질쌀 생산단지 사업</u>	<삭 제>
49. (생략)	62. (현행 제49호와 같음)
<신 설>	49. <u>소비자 농업 및 가정원에 관련 사업</u>
<신 설>	50. <u>종합검정실 운영</u>
<신 설>	51. <u>토양검정 및 적정시비 처방</u>

현행	개정안
<신 설>	52. <u>농산물 안전성 분석</u>
<신 설>	53. <u>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지도</u>
<신 설>	54. <u>농업기상조사 분석활용</u>
<신 설>	55. <u>천적증식 및 보급사업</u>
<신 설>	56. <u>기상 관측장비 운영관리</u>
<신 설>	57. <u>화훼 시범사업 및 농가 기술지도</u>
<신 설>	58. <u>국화 우량품종 보급 및 재배기술 보급</u>
<신 설>	59. <u>국화 축제 및 행사지원</u>
<신 설>	60. <u>화훼류 식물병원 운영</u>
<신 설>	61. <u>꽃 온실 및 꽃 하우스 운영</u>
③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특화작목의 브랜드 개발 및 관리</u>	<삭 제>
10. ~ 11.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12. <u>소비자농업 및 가정원예관련 사업</u>	<삭 제>
13. <u>종합검정실 및 쌀 품질관리실 운영</u>	<삭 제>
14. <u>토양검정 및 적정시비 처방</u>	<삭 제>
15. <u>농산물 안정성 분석</u>	<삭 제>
16. <u>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지도</u>	<삭 제>
17. <u>농업기상조사 분석활용</u>	<삭 제>
18. <u>천적증식 및 보급사업</u>	<삭 제>
19. <u>기상 관측장비 운영관리</u>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0. ~ 33. (생략)	20. ~ 33. (현행과 같음)
34. 화훼 시범사업 및 농가 기술지도	<삭 제>
35. 국화 우량품종 보급 및 재배기술 보급	<삭 제>
36. 국화 축제 및 행사지원	<삭 제>
37. 화훼류 식물병원 운영	<삭 제>
38. 꽃 온실 및 꽃 하우스 운영	<삭 제>
39. ~ 41. (생략)	39. ~ 41. (현행과 같음)
42. (생략)	56. (현행 제42호와 같음)
<신 설>	42. 쌀 품질관리실 운영
<신 설>	43. 축산일반 및 시범사업 기술지도
<신 설>	44.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신 설>	45. 디지털 정보화센터 구축운영
<신 설>	46. 농가 표준소득조사 및 지도자료 활용
<신 설>	47. 농가경영 컨설팅 경영지도
<신 설>	48. 경영개선을 위한 시범농가 육성
<신 설>	49.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용 시범
<신 설>	50. 농산물 쇼핑몰 운영 및 농가교육
<신 설>	51.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상담
<신 설>	52. 농가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53.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정보제공
<신 설>	54.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관리
<신 설>	55. 브랜드 쌀 생산단지 사업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읍·면·동장의 직급(제44조 관련)			[별표 3] 읍·면·동장의 직급(제44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기 관 별	직 위	직 급
---			---		
여산면 사무소	여산면장	<u>지방행정사무관</u> 또는 <u>지방환경사무관</u>	여산면 사무소	--	<u>지방행정사무관·지방 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u>
---			---		

익산시공고 제2010-1208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익 산 시 장

1. 개정 이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력 배치 등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토록 관련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복수직렬 조정(안 별표)

- 1) 본 청 : 공 업 6 급 △1 → 공 업·보 건 6 급 +1
공 업 6 급 △1 → 행 정·공 업 6 급 +1
- 2) 사 업 소 : 공 업 6 급 △1 → 행 정·공 업 6 급 +1
- 3) 출 장 소 : 시 설 6 급 △1 → 행 정·시 설 6 급 +1
- 4) 읍 면 동 : 행 정·환 경 5 급 △1 → 행 정·시 설·환 경 5 급 +1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0 - 751 익산시 인북로 32길1 익산시 행정지원과(전화 : 859-5731, FAX : 859-505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업무 담당자 (전화 : 859-57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력 배치 등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토록 관련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복수직렬 조정(안 별표)

- | | | | | |
|------|---|--------------------|---|--------------------|
| 1) 본 | 청 | : 공 업 6 급 △1 | → | 공 업·보 건 6 급 +1 |
| | | 공 업 6 급 △1 | → | 행 정·공 업 6 급 +1 |
| 2) 사 | 업 | 소 : 공 업 6 급 △1 | → | 행 정·공 업 6 급 +1 |
| 3) 출 | 장 | 소 : 시 설 6 급 △1 | → | 행 정·시 설 6 급 +1 |
| 4) 읍 | 면 | 동 : 행 정·환 경 5 급 △1 | → | 행 정·시 설·환 경 5 급 +1 |

3. 참고 사항

-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나. 예산 수 반 여부 : 부
-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 라. 입 법 예 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 가. 일부개정규칙안
-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일반직 5급 행정·환경란 합계 “3”을 “2”로 하고, 면 “2”를 “1”로 하며, 일반직 5급 행정·시설·보건란 다음에 일반직 5급 행정·시설·환경란 및 합계·면“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6급 공업란 합계 “9”를 “6”으로 하며, 본청 “5”를 “3”으로 하고, 사업소 “4”를 “3”으로 하며, 일반직 6급 시설란 합계 “21”을 “20”으로 하고, 출장소 “2”를 “1”로 하며, 일반직 6급 행정·시설란 합계 “31”을 “32”로 하고, 출장소 “1”을 신설하며, 일반직 6급 행정·공업란 합계 “17”을 “19”로 하고, 본청 “11”을 “12”로 하며, 사업소 “6”을 “7”로 하고, 일반직 6급 공업·환경란 다음에 일반직 6급 공업·보건란 및 합계·본청 “1”을 각각 신설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	사업소	출장소	--	면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	사업소	출장소	--	면
합계	1,395	628		195	12		178	합계	--	--		--	--		--
---								---							
일반직 계	1,088	522		124	11		158	일반직 계	--	--		--	--		--
--								--							
5급 소계	73	28		9	1		14	5급 소계	--	--		--	--		--
---								---							
행정·환경	<u>3</u>						<u>2</u>	행정·환경	<u>2</u>						<u>1</u>
행정·시설·보건								행정·시설·보건							
<신설>								행정·시설·환경	<u>1</u>						<u>1</u>
---								---							
6급 소계	275	138		33	3		55	6급 소계	--	--		--	--		--
---								---							
공업	<u>9</u>	<u>5</u>		<u>4</u>				공업	<u>6</u>	<u>3</u>		<u>3</u>			
---								---							
시설	<u>21</u>				<u>2</u>			시설	<u>20</u>				<u>1</u>		
---								---							
행정·시설	<u>31</u>				<u>0</u>			행정·시설	<u>32</u>				<u>1</u>		
---								---							
행정·공업	<u>17</u>	<u>11</u>		<u>6</u>				행정·공업	<u>19</u>	<u>12</u>		<u>7</u>			
---								---							
공업·환경								공업·환경							
<신설>								공업·보건	<u>1</u>	<u>1</u>					
---								---							